#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과 과제

손성동

한국연금연구소

## [목 차]

- Ⅰ. 도입배경
- Ⅱ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내용
- Ⅲ. 해외의 유사제도\_일본 중퇴공
- Ⅳ. 향후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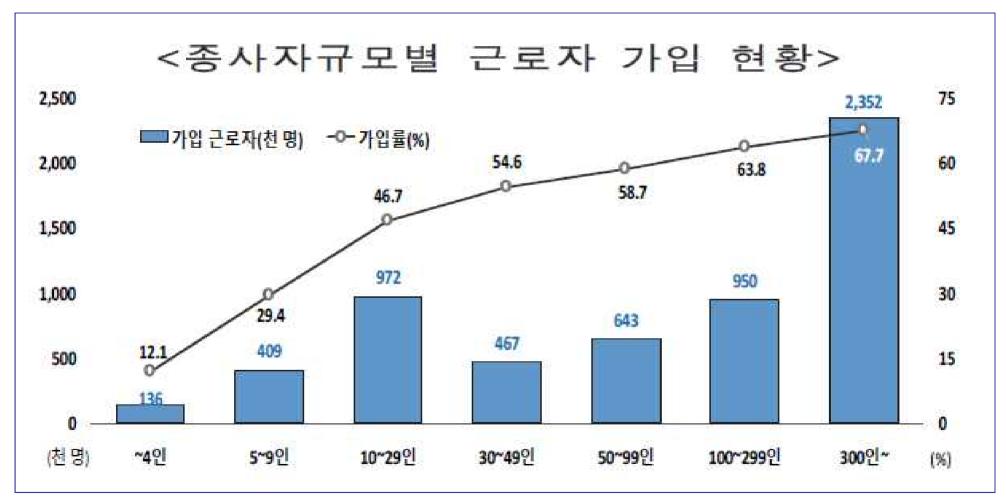
## ↓. 도입배경

"어느 병원의 퇴직연금 분투기"

## . 도입배경

#### √ 종사자 규모와 퇴직연금 가입률의 비례 관계

→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확산을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



자료: 통계청(2020), p.12

## ↓. 도입배경

#### √ 짧은 근속기간과 적은 적립금

#### →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한 퇴직연금 모델 필요

그님	평균연령	평균근속년수	평균 기준급여액	평균 적립금평가액	인원(명)
구분	(세)	(년)	(원)	(원)	(구성비)
17~29세	25.56	1.37	1,703,501	9.477.970	29,424
17~29/1	20.00	1.57	1,705,501	2,477,270	(15.34%)
30~39세	94.77	2.81	2.062.400	4 644 001	50,893
20~294	34.77	2.01	2,062,409	4,644,081	(26.54%)
40 40 10	44.35	2.40	0.100.704	E 600 100	61,050
40~49세	44.55	3.49	2,138,724	5,688,423	(31.84%)
50 50 1	E4.00	4.10	9 170 975	7 190 944	36,466
50~59세	54.08	4.10	2,170,875	7,120,244	(19.02%)
60~70세	60.46	63.46 3.83	1,824,397	6,214,281	13,931
	03.40				(7.26%)
전체	49.16	0.10	2,032,953	5,241,000	191,764
	42.16 3.13	3.13			(100%)

자료 : 성주호 외(2016), p.11

## ▎. 도입배경

#### √ 전체 평균보다 더 보수적인 적립금운용 행태

→ 기대수익률 제고가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

구분	원리금보장형	실적배당형	현금성자산	합계
공단(A)	98.55%	0.30%	1.15%	100%
전체평균(B)	78.80%	18.60%	2.60%	100%
차이(A-B)	+19.75%	-18.30%	-1.45%	_

주: 2016년 6월말 기준이며, 전체평균은 DC형 적립금운용 방법을 말함.

자료: 공단은 성주호 외(2016), 전체평균은 고용노동부 자료

#### 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내용】

취지

"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,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(이하 중퇴기금) 도입"

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연간 <mark>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</mark>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"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"에 납입

적립금

"둘이상"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"공동의 기금"을 조성 ·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"(근퇴법 2조 14호) 운영

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운용계획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· 의결

급여

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23조의 12)

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사용자부담금,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(23조의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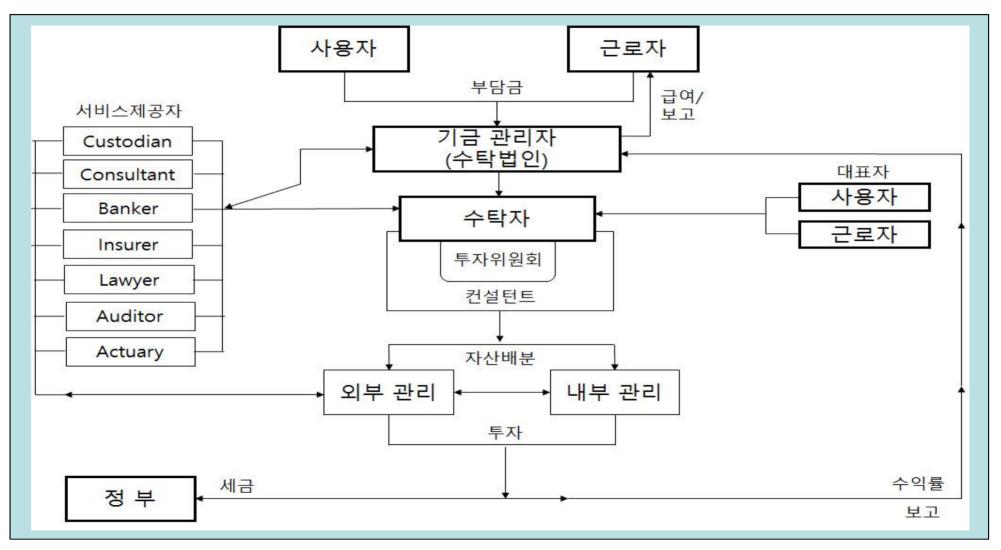
자료: 송홍선(2020)

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①: 지배구조\_기금형】

구분	계약형	기금형	
연금관리 형태	금융회사에 일괄위탁	독립적인 퇴직연금기금 설치	
관리 및 운영 주체	금융회사 (운용관리/자산관리 기관)	기금운용의 외부위탁	
주요 의사결정자	사용자	연기금위원회 (노사동수)	
가입자 참여	근로자 직접투자(DC)	기금운영 전반 적극 참여 근로자 직접투자(DC)	
핵심 감독대상	금융회사	개별 퇴직연금기금	

자료 : 류건식 외(2013)을 참고해 작성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①: 지배구조\_기금형】



자료: Clark(2010), p.79를 참고해 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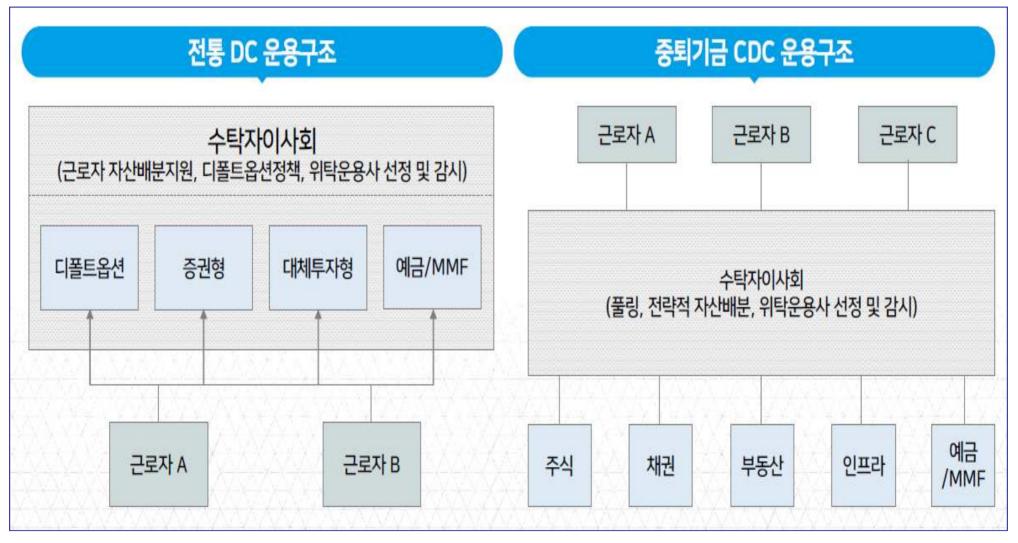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①: 지배구조\_기금형】

☑ 운영위원회 구성: 노, 사, 연기금 전문가, 정부 포함 10-15인



자료: 국회 근퇴법 검토보고서(2020), 송홍선(2020)에서 재인용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②: 적립금운용\_집합운용】



자료: 송홍선(2020)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③: 급여지급\_공동손익 방식 】

제23조의 12(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)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1.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.
- 2.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인전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③ 이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③: 급여지급\_공동손익 방식】

#### 급여정책 설계의 원칙

#### 투자성과 기반 급여지급

☑ 기금 운용의 성과(운용수익률)를 매년 가입자에서 배분함으로써 DC형에 가까운 CDC 제도의 기본원칙(성과에 대한 자기책임)을 준수

#### 가입자간 급여 형평 추구

✓ 개인계정 ⇔ 집합운용 ⇔ 공동손익부담원칙에 따라 상생유보금계정 운영, 가입자간 세대간 급여 격차를 완화, 가입자 형평(solidarity) 추구

#### 장기가입 유도

☑ 급여정책에 가입자들의 장기 가입 유도 위한 유인체계(incentive) 설계, 중 퇴기금의 제도적 재정적 안정 추구

자료 : 송홍선(2020)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③: 급여지급\_공동손익 방식】

#### 급여정책 방안

☑ 계정: 일반계정, 상생유보금계정

✓ 지급방식: • 매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운용수익율은 유보금 적립 위한 유보율을 제한 수익률

• 3년 초과 가입 근속자 대상 최소수익률 보장

일반계정	기금을 집합운용 하는 일반계정. 일반계정은 가입자 각자의 가상계정의 합으로 구성. 매년말 순운용수익이 가입자 가상 계정으로 배분		
상생유보금 계정	위기시 최소수익률 보장을 위해 중퇴기금 내 공동계정으로 내면 유보금을 적립 적정 유보금 이상 적립시 운영위원회에서 유보금 배당정책 수립(부가급여 또는 지속적립)		
특정 t시점 계속 근로자 퇴직자산 잔액	적립금 $_{t-1}$ [1+(운용수익률 $_{t}$ - 유보율 $_{t}$ )]		
근속 1년 이상 3년 이하 퇴직자 퇴직자산	정상시장: 적립금 <sub>t-1</sub> [1+(운용수익률 <sub>t</sub> - 유보율 <sub>t</sub> )] 비정상시장: 적립금 <sub>t-1</sub> [1+운용수익률 <sub>t</sub> ] * 비정상시장이므로 운용수익률 < 최소수익률		
근속 3년 초과 퇴직자	정상시장: 적립금 <sub>t-1</sub> [1+( <del>운용</del> 수익률 <sub>t</sub> - 유보율 <sub>t</sub> )] 비정상 시장: 적립금 <sub>t-1</sub> [1+최소수익률 <sub>t</sub> ]		

자료: 송홍선(2020)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④: 비용부담\_사용자+국가】

제23조의 14(국가의 지원)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,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,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

#### 【중퇴기금의 특징 ⑤ : 운영주체\_공공기관】

#### <근퇴법 제4장의 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>

제23조의 2(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)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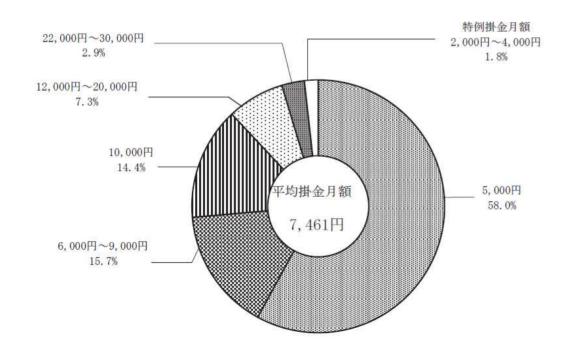
-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(이하 운영위원회)를 둔다.
-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,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.
- 1. 공단의 상임이사
- 2.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
- 3.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
- 4.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

#### 【제도 개요】

- <mark>성격</mark>: 중소기업퇴직금공제법(1959년)에 의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운영하는 사외적립 퇴직급여제도
  - 중소기업 사용자의 상호부조 정신과 국가의 지원으로 퇴직급여제도 확립
    - →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 도모,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
- 운영주체: 독립행정법인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
- 가입범위: 산업별 근로자수/자본금에 따라 상이
  - 소매업 : 상용근로자 5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사업장
  - 도매업: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1억엔 이하 사업장
  - 서비스업: 상용근로자 1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사업장
  - 제조업/건설업 등 일반업종 : 상용근로자 300인 이하 또는 자본금 3억엔 이하

#### [제도 개요]

- 보험료: 전액 사용자 부담
  - 근로자별 월 부담액은 16종(5000엔 ~ 30000엔)
  - 동일 사업장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특례부담액 3종(2~4000엔)



**월납입액 평균** 7,461**엔** 

58%가 5000엔 선택

**가입자수**: 347**만명** 

**운용자산**: 4.9**조엔**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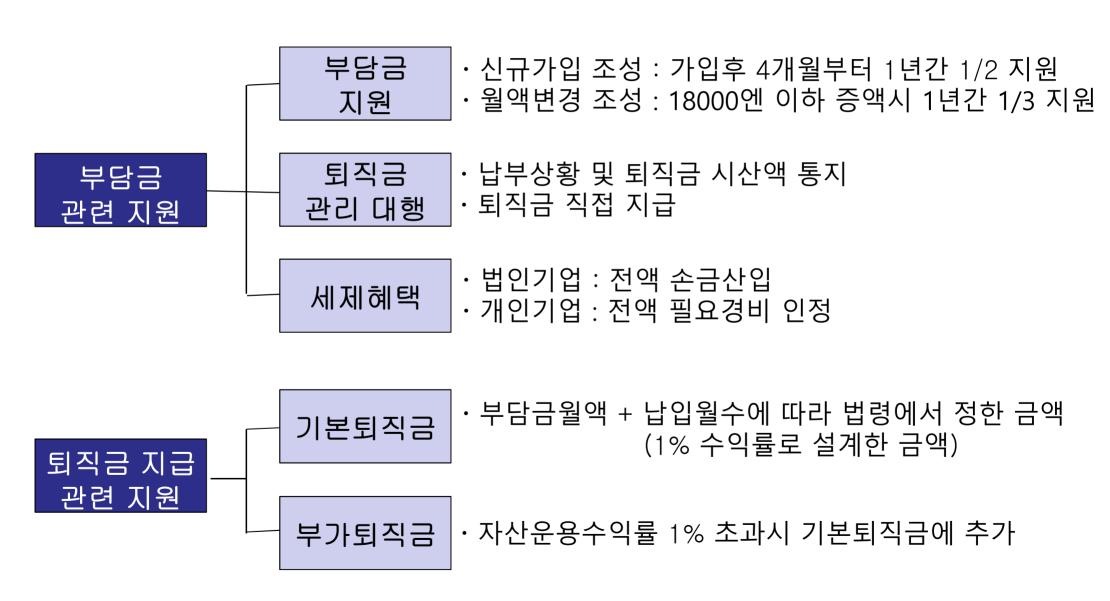
(2018년 9월 현재)

#### 【제도 개요】

■ 퇴직급여 수령: 일시금 지급이 기본, 단 아래 조건 충족시 연금수령 가능

	수령 기간	전액분할 수령방식	일부분할 수령방식	수령 회수	분할지급률
퇴직일 기준 60세	5년	퇴직금액 80만엔 이상	일시금 20만엔 이상 분할 80만엔 이상	20회	51/1000 + 후생노동성 지급률
이상	10년	퇴직금액 150만엔 이상	일시금 20만엔 이상 분할 150만엔 이상	40회	26/1000 + 후생노동성 지급률

#### [국가의 지원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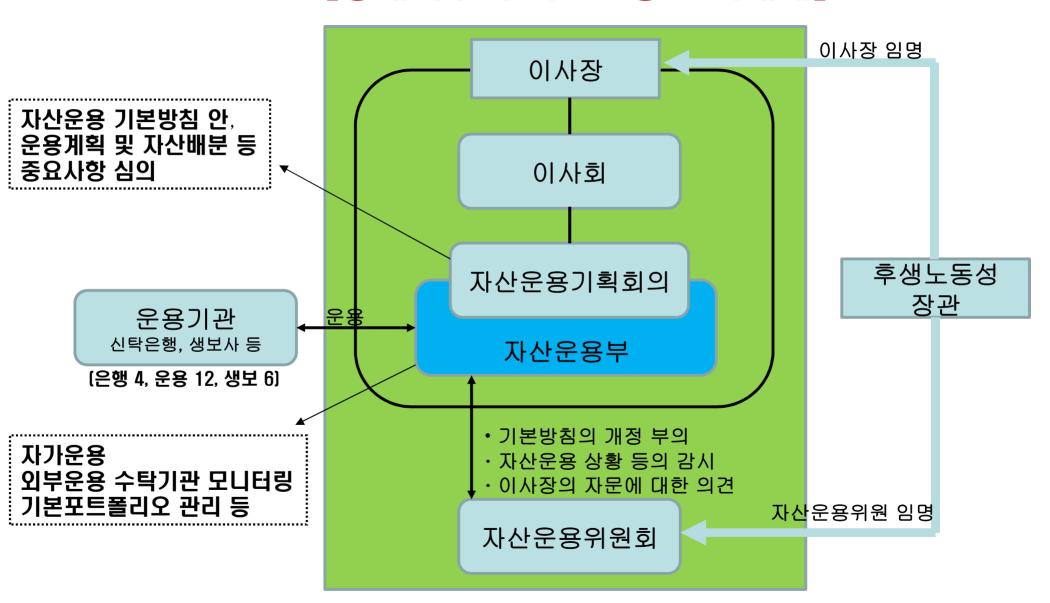


#### 【공제기구의 운영구조】

#### ■ 공제기구의 법령상 기본 지배구조

- √ 임원 + 운영위원회 + 자산운용위원회
- √ 임원: 이사장, 감사 2인, 4명 이내의 임원
- √ 임원 역할: 법령 및 장관의 처분, 공제기구의 업무방법서 및 규칙 등 준수
- √ 운영위원회 : 공제운영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장관이 임명(20명 내)
- √ 운영위원회 역할 : 공제규정과 업무방법서 변경, 연간 및 중기계획 수립, 이사장 자문 응대,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
- ✓ 자산운용위원회 : 경제/금융 고도의 식견을 가진 자 및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장관이 임명
- √ 자산운용위원회 역할: 자산운용 기본방침 작성 및 변경 심사, 자산운용 감시 등

#### 【공제기구의 자산운용 관리체제】



#### 【공제기구의 자산운용 기본방침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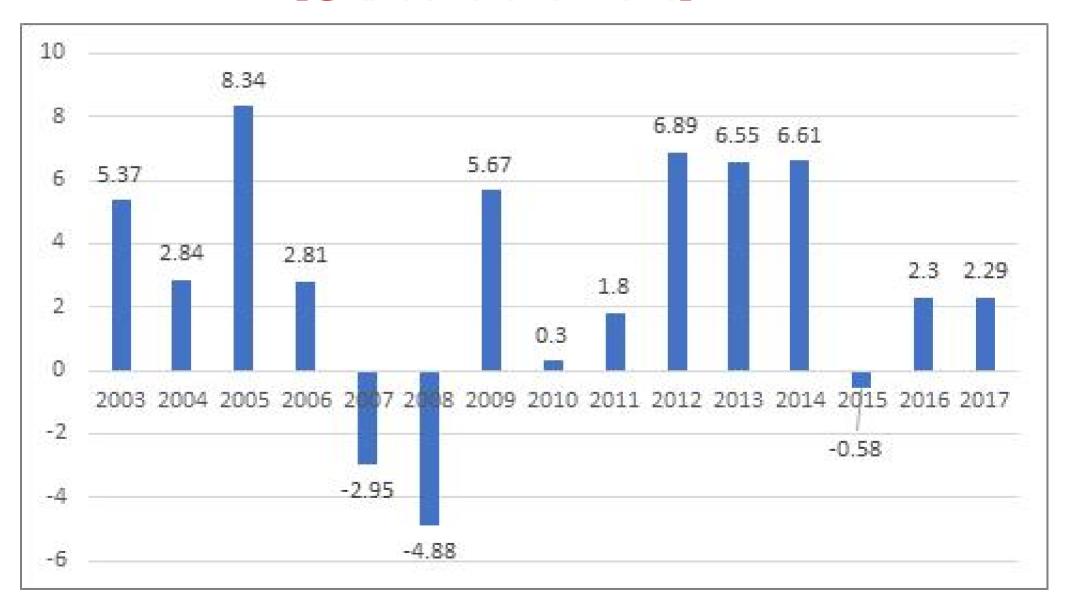
- 목적: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가는데 필요한 수익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것
- 목표: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중기적으로 중퇴공 사업의운영에 필요한 수익률을 최소한의 리스크로 확보하는 것
- 기본포트폴리오: 투자대상 자산의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를 고려
  - •매년 검증하며, 제 조건 변한 경우 기본 포트폴로리오 변경

구분	국내채권	국내주식	외국채권	외국주식	합계
자산배분	79.6	7.2	9.9	3.3	100.0
괴리허용폭	±3.0	±2.0	±1.0	±1.0	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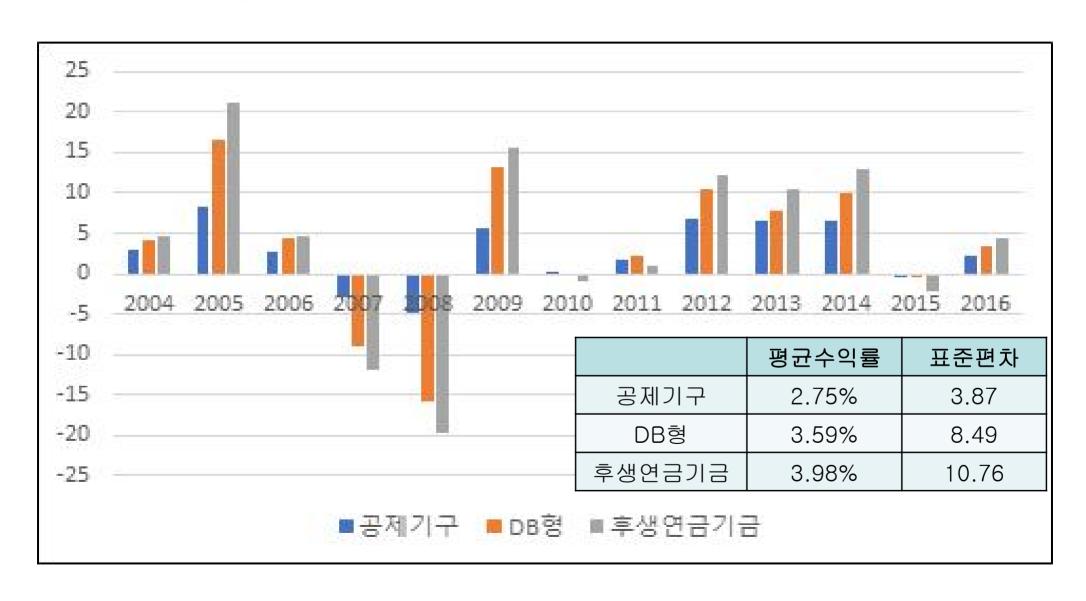
#### 【공제기구의 자산운용 현황】

구분		자산(억엔)	구성비(%)	수익률(%)
	유가증권	25,588	52.80	0.58
자가운용	예금	1,059	2.18	0.00
	소계	26,647	54.98	0.57
	금전신탁	20,186	41.65	4.69
위탁운용	생명보험자산	1,629	3.36	1.32
	소계	21,815	45.02	4.42
합계		48,462	100.0	2.29

#### 【공제기구의 수익률 추이】



#### 【공제기구·DB형·후생연금기금 수익률 비교】



## Ⅳ.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지배구조 구축방안

#### 【중퇴공과 중퇴기금 비교】

구분	중퇴공제도	중소 기금형(안)
법 체계	· 별도의 법 마련	・근퇴법 내 4장의 2 신설
도입 배경	· 중소기업 대책의 일환	·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
도입 목적	· 중소기업 퇴직급여제도 확산	·적립금운용 개선(?)
부담금 납입	· 사용자만 납부	·사용자 + α(근로자)
국가의 역할	· 부담금지원, 퇴직금관리, 최저이율 보장	· 부담금 및 기금 운영비용 일부 예산 범위 내 지원
운영 주체	· 중소기업퇴직금공제기구	· 근로복지공단
핵심 의사결정기구	· 운영위원회, 자산운용위원회	· 운영위원회
구성	· 운영위원회 : 20인 이내 · 자산운용위원회 : 5인 이내	· 운영위원회 : 10~15인
자산운용 방식	· 자산운용 기본방침에 따름 · 자가운용과 위탁운용 병행	ㆍ시행령에 위임

#### 【국가지원의 범위 및 기한】

-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기간에 따라 국가지원의 범위는 달라짐.
  - 지원대상: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대상은 사용자부담금에
    초점을 둘 필요
    -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보장 = f(가입률, 적립금액)

"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<u>취약계층</u> <u>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</u>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,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."(제안이유 중에서)

- 지원규모: 가용예산, 시장에 대한 영향, 가입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
- 지원기간 : 일정한 기간 or 제도 유지 내내
  - 일정 기간 : 3년 or 의무화 시점까지

#### 【퇴직연금 의무화 일정】

기업규모	의무화 시점
100명 이상	2022.10월
30명 이상 100명 미만	2024.04월
10명 이상 30명 미만	2025.10월
5명 이상 10명 미만	2027.04월
5명 미만	2028.10월

주:1) 기업규모는 상시 근로자 기준

2) 의무화 시점은 공포일을 2021.4.1일로 가정하여 산출한 것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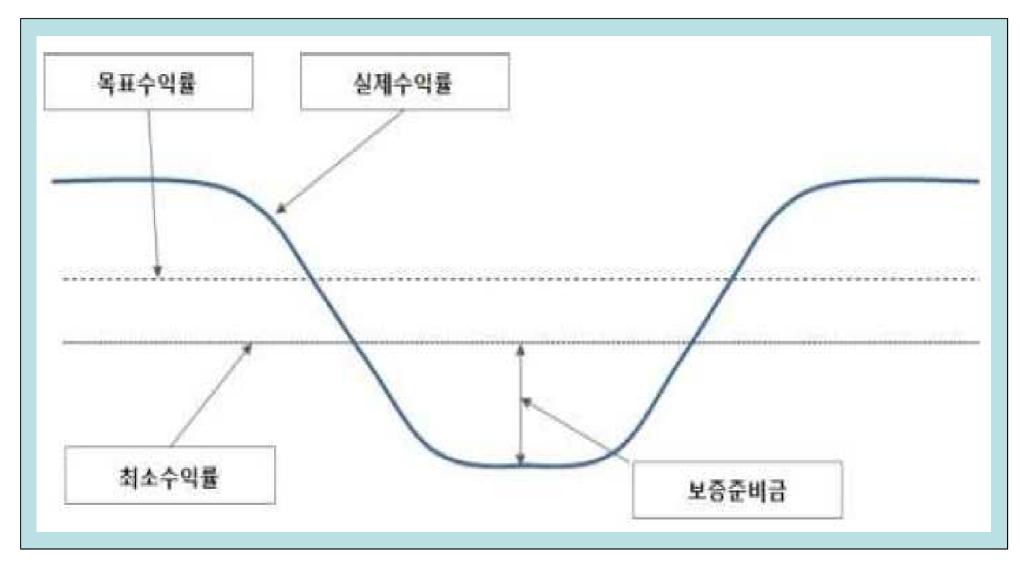
### ₩. 향후 과제

#### 【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방법】

☑ 보장 방식: 금융위기 등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발생 시점(아래 그림 10년 차에 4.5% 손실)에 최소수익률 (1%) 보장 ☑ 보장 대상: 해당 년도 퇴직자(예시, 가입자 중 10년 차에 퇴직하는 퇴직자) ☑ 장점: 퇴직자 한 해 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통해 과도한 유보율 부담 완화 • 평시에는 기대수익률(3.6%)이 최소수익률(가령 1%) 상회하기 때문에, 평시 자산배분 기대수익률 추구하면서 가입자간 형평을 급여정책에 반영 최소수익률 보장방식: 예시 **3.6** 3 8 9 12 13 10 11 14 -45 - 최소수익률

자료 : 송홍선(2020)

#### 【제한적 최소수익률 보장 방법】



자료 : 성주호 외(2016)

#### [감독방안]

-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을 감안한 감독방안 모색 필요
  - 고용노동부의 중퇴기금에 대한 감독 외 퇴직연금기금의 다차원적 주인 • 대리인 문제가 중퇴기금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 실효적인 감독방안 필요
    - 특히 대리인 대리인 간의 문제가 주인인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밀한 감독 필요
  - "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·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."(제23조의16)
  - 중퇴기금의 마이크로 지배구조 방안 모색도 필요

#### 【호주 슈퍼애뉴에이션에서의 주인-대리인 문제】

구분	주인	대리인	주요 행위	계약 및 보상
Type- I	가입자	사용자	사업자(기금) 및 수탁자 선택	None
Туре-П	가입자	수탁자 (사업자)	기금운영, 포트폴리오 선택, 비용발생	· 수탁자가 자신의 보수와 신탁비용 결정 · 극단 조건하 규제당국이 수탁자 교체
Туре-Ш	수탁자	자산 컨설턴트	포트폴리오 선택, 자산배분 조언	・계약으로 수탁자가 교체 ・수수료(AUM%)
Type-IV	수탁자	기금 매니저	포트폴리오 운용	・계약으로 수탁자가 교체 ・수수료(AUM%)

자료: Drew & Stanford(2003), 손성동(2018)에서 재인용

# 감사합니다!!!